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2.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59호로 202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구민 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준 조정

(안 제7조 관련 별표)

- 1) 분뇨(10ℓ) 150원 → 180원
- 2) 정화조 기본요금(0.75m<sup>3</sup>) 22,300원 → 22,500원
- 3) 정화조 초과요금(0.1m<sup>3</sup>) 1,620원 → 1,960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12. 23.~ 2022. 1. 12.)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구민 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 관련 별표에서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분		현 행	인상(안)	비 고
분뇨(10ℓ)		150원	180원	30원↑/(20%)
정 화 조	기본(0.75m <sup>3</sup> )	22,300원	22,500원	200원↑/(0.9%)
	초과(0.1m <sup>3</sup> )	1,620원	1,960원	340원↑/(21%)

##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17년 인상 후 4년간 동결되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된 실정으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수수료 인상기준은 구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기본요금은 25개 자치구와 동일하게 22,500원을 적용하고 초과요금은 인건비 상승률과 자치구 평균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96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서울시 자치구별 정화조 분뇨 수거 수수료 현황

(‘21. 10월 기준)

연번	구 별	요금 인상 년 월 일	종전 인상 년 월 일	정 화 조	
				기본(0.75 $m^3$ )	초과(0.1 $m^3$ 당)
1	강북구	2017.09.01	2007.05.01	23,430	2,220
2	중 구	2020.07.20	2011.07.01	22,500	2,200
3	성북구	2018.01.01	2007.12.01	22,500	2,150
4	관악구	2018.01.01	2009.03.01	22,500	2,120
5	도봉구	2017.03.30	2007.05.01	22,500	2,116
6	중랑구	2009.12.29	-	22,500	2,070
7	노원구	2017.12.28	2009.06.01	22,500	2,050
8	용산구	2020.12.31	2015.04.13	22,500	1,990
9	동작구	2019.01.01	2010.01.01	22,500	1,972
10	강동구	2018.01.01	2008.07.01	22,500	1,960
11	동대문구	2019.06.01	2013.01.01	22,500	1,950
12	은평구	2020.03.01	2008.11.01	22,500	1,900
13	금천구	2019.03.01	2009.09.01	22,500	1,892
14	송파구	2018.07.29	2009.07.17	22,500	1,830
15	마포구	2021.01.01	2013.03.01	22,500	1,800
16	구로구	2018.09.01	2010.12.01	22,500	1,800
17	광진구	2019.01.01	2011.12.01	22,500	1,790
18	성동구	2019.06.01	2012.02.23	22,500	1,720
19	서초구	2017.07.01	2009.11.02	22,500	1,700
20	영등포구	2017.07.01	2011.09.01	22,300	1,620
21	강남구	2017.06.01	2009.04.01	22,500	1,608
22	강서구	2016.01.01	2010.07.01	21,580	1,550
23	종로구	2013.01.01	-	21,400	1,550
24	양천구	2012.01.01	-	19,800	1,550
25	서대문구	2009.12.31	-	22,500	1,500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⑤항 <생략>